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4 차) 변경 실시 협약



2020. 7. 27.

국 토 교 통 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4차)변경 실시협약

국토교통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18일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 2011년 4월 7일 (1차)변경 실시협약, 2014년 11월 19일 (2차)변경 실시협약, 2016년 9월 21일 (3차)변경 실시협약(이와 같이 3차 까지 변경이 반영된 실시협약을 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바,

위 (3차)변경 실시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변경 등 및 자금재조달계획서 승인 요청(인천김포 2014-1029호 2014. 12. 18.)으로 인한 자금재조달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최종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이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조건에 반영하고, 또한 건설기간 중 발생한 실시협약에 따른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조정사유에 대한 협약당사자간에 협의된 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27일 다음과 같이 ~~본~~ (4차)변경 실시협약 (이하 “변경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정의)

본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 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총사업비는 <별표2>(총사업비 및	총사업비는 <별표2>(총사업비 및

<p>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8,857.85억원이며 총사업비 중 총민간사업비는 <별표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7,724.04 억원이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p>	<p>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8,853.92억원이며 총사업비 중 총민간사업비는 <별표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7,720.11 억원이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p>
--	--

제 3 조 (공사비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19조(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공사비는 <별표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8,041.35억원으로 한다. 단,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따라 변경되는 공사비는 잠정적으로 별표2에 기재된 실시설계 미시행분 2,383.78억원으로 하되, 실시설계 완료후 설계VE 등을 통해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p>	<p>공사비는 <별표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8,070.08억원으로 한다.</p>

제 4 조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42조(운영비용)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2,912.0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2,911.26

<p>억원(법인세 제외)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표7>(운영비용)과 같다. 단,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변경되는 운영비는 잠정적으로 142.1억원으로 하되, 실시설계 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고속도로통행카드 할인수수료, ETCS운영에 따른 통행료 정산수수료 등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제수수료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억원(법인세 제외)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표7>(운영비용)과 같다. 고속도로통행카드 할인수수료, ETCS운영에 따른 통행료 정산수수료 등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제수수료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	--

제 5 조 (사업수익률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49조(사업수익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u>5.70%</u>(세후 <u>5.07%</u>)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세전 실질수익률은 변경되지 아니한다.</p>	<p>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u>4.86%</u>(세후 <u>4.36%</u>)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세전 실질수익률은 변경되지 아니한다.</p>

제 6 조 (부록의 변경)

실시협약의 별표 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별표 2-1[건설보조금 재원 및 지급일정], 별표 3[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별표 5[차종별 기준사용료], 별표 6[추정 사용료수입], 별표 7[운영비용], 별표 8[사용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별표 11[재무모델] 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 2[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별표 2-1[건설보조금 재원 및 지급일정], 별표 3[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별표 5[차종별 기준사용료], 별표 6[추정 사용료수입], 별표 7[운영비용], 별표 8[사용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별표 11[재무모델]으로 각

각 변경된다. 실시협약상 해당 별표에 대한 언급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의해 변경된 별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실시협약의 규정은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 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

변경실시협약은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기재 일자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7월 27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해정

